

## 용인시 공공시설 안의 매점·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및 위탁 계약에 관한 조례

|       |              |  |
|-------|--------------|--|
| 제정    | 1996. 12. 19 | 조례 제 76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개정    | 1998. 10. 8  | 조례 제 138호(행정기구 설치 조례)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| 1998. 2. 5   | 조례 제 164호(행정기구 설치 조례)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| 2000. 12. 29 | 조례 제 303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| 2001. 3. 16  | 조례 제 323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| 2003. 3. 21  | 조례 제 432호(행정기구 설치 조례)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| 2005. 10. 5  | 조례 제 677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일부 개정 | 2011. 12. 15 | 조례 제 1200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일부 개정 | 2013. 3. 6   | 조례 제 1273호(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)                 |
| 일부 개정 | 2013. 11. 1  | 조례 제 1329호(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)                 |
| 일부 개정 | 2014. 10. 6  | 조례 제 1386호(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)                 |
| 일부 개정 | 2015. 11. 6  | 조례 제 1514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전부 개정 | 2018. 9. 28  | 조례 제 1854호(제명개정)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일부 개정 | 2019. 7. 1   | 조례 제 1936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일부 개정 | 2023. 7. 31  | 조례 제 2425호(만 나이 정착을 위한 용인시 조례<br>일괄개정조례) |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장애인복지법」 제42조, 「노인복지법」 제25조,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15조,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8조의2,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의2 및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6조의3에 따라 시가 설치·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하는 경우 장애인 등이 우선적으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9. 7. 1>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장애인 등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  - 가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
  - 나. 「노인복지법」 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의 자
  - 다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같은 조제7호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단체
  - 라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

## 용인시 공공시설 안의 매점·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및 위탁 계약에 관한 조례

마.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

바.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7조의6에 따른 보호대상자

2. “공공시설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.

가. 용인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 본청과 직속기관, 사업소, 하부행정기관(이하 “소속행정기관”이라 한다)의 청사

나. 가목 외의 시가 직접 관리하는 시설

다. 시 및 그 소속행정기관이 설치하여 유관단체에 위탁한 시설

라. 시 지방공기업이 직접 관리하는 시설

마. 시의 출자·출연 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시설

제3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공공시설 안의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 허가 및 위탁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.

제4조(사전 공고 등) 용인시장, 소속행정기관의 장, 시 및 그 소속행정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유관단체의 장, 시 지방공기업의 장 및 시 출자·출연 기관의 장(이하 “시장 등”이라 한다)은 공공시설 안에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해당 기관 또는 시 홈페이지(시정개시판 또는 용인시보 등을 말한다)에 공고하고, 시 장애인복지업무 담당 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.

제5조(신청) 공공시설 안에 매점이나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거나 위탁을 받으려는 장애인 등은 공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,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 등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 <개정 2019.

7. 1>

1. 별지 서식에 따른 공공시설 안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또는 위탁 계약 신청서 1부

2. 제2조제1호 각 목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
제6조(설치 허가 및 위탁 계약) ① 시장 등은 제5조에 따라 2명 이상의 장애인 등으로부터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별표의 우선순위에 따라 매점이

## 용인시 공공시설 안의 매점·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및 위탁 계약에 관한 조례

나 자동판매기의 설치 허가 또는 위탁 계약 대상자를 결정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위탁 계약 기간은 3년으로 하되, 운영·관리 상태 등을 고려하여 우선 계약대상 여부를 재평가한 후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.

**제7조(계약자 등의 의무)** 제6조에 따라 공공시설 안에 매점 또는 자동판매기의 설치 허가를 받거나 위탁 계약을 체결한 자는 해당 시설을 직접 운영·관리하여야 한다.

**제8조(사용료 등)**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허가 또는 위탁 계약에 따른 시설사용료 정수기준 및 방법은 「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」를 따르되, 전기 등의 사용료는 실비만을 정수한다.

**제9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 <2018. 9. 28 조례 제1854호 전부개정>

**제1조(시행일)**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일반적 경과조치)**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「용인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.

부칙 <2019. 7. 1 조례 제1936호>

**제1조(시행일)**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경과조치)** 이 조례 시행 전 공고된 설치 허가 및 위탁 계약에 대해서는 제5조 및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부칙 <2023. 7. 31 조례 제2425호,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용인시 조례 일괄개정조례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 <개정 2023. 7. 31>

## 장애인 등이 2명 이상 신청한 경우 우선순위

(제6조 제2항 관련)

### 1. 장애인 등이 2명 이상 신청한 경우 우선순위

| 순위 | 장애인   | 65세 이상 노인                        | 한부모가족 및 한부모가족복지단체            | 독립유공자·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| 북한이탈주민               |
|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1  |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     | 70세 이상 노인으로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|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        |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    |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|
| 2  |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서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| 65세 이상 노인으로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|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   | 미과세대상자                   | 미과세대상자               |
| 3  | 미과세 대상 장애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65세 이상 노인으로 미과세대상자               |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단체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

※ “미과세대상자”란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.

2. 제1호의 우선순위가 같은 경우 또는 제1호의 우선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따른다.
- 부양가족(「주민등록법」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배우자, 직계존비속을 말한다) 수가 많은 사람
  - 용인시 거주기간(「주민등록법」 제16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최근 용인시 전입신고일부터 거주기간을 기산한다.)이 오래된 사람 단, 단체간 경쟁 시 단체등록일이 오래된 단체, 개인과 단체 경쟁 시 개인은 용인시 거주기간, 단체는 운영기간으로 함.
  - 추첨

## [별지 서식]

| 공공시설 안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또는 위탁 계약 신청서   |  |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|
|--|--|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|
| 신청인  | 성명   |   | 생년월일           |             |   |
|  | 주소   |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|
|  | 신청구분   | <input type="checkbox"/> 장애인<br><input type="checkbox"/> 65세 이상 노인<br><input type="checkbox"/> 한부모가족, 한부모가족 복지단체<br><input type="checkbox"/> 국가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<br><input type="checkbox"/> 독립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<br><input type="checkbox"/>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|
|  |  | 시설명   |                | 영업의 종류      | <input type="checkbox"/> 매점<br><input type="checkbox"/> 자동판매기 |
|  |  | 설치장소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|
|  |  | 설치대수  | 매점             | 개소( $m^2$ ) |   |
| 자동판매기  |  |   | 대(음료수, 커피, 기타) |             |   |
| 「용인시 공공시설 안의 매점·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및 위탁 계약에 관한 조례」 제5조에 따라 (매점, 자동판매기) 설치 허가 또는 위탁 계약을 신청합니다. |  |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|
| 년      월      일  |  |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|
| 신청인 : (서명 또는 인)  |  |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|
| 귀하   |  |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|
| 구비서류   | 「용인시 공공시설 안의 매점·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및 위탁 계약에 관한 조례」 제2조제1호 각 목의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. |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|